

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「표준약관」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한다.

이용자 (갑)	성 명	(인)	등급(인증번호)	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
	주 소	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16번길 30 대흥프라자 6층		
	기 타	☐ 일반 ☐ 경감대상자() 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시설명	효은요양원	시설종류	노인요양시설(개정법)
	시설장 성명	최재관 (인)	연락처	032)466-6660
	주 소	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16번길 30, 대흥프라자6층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(인)	관 계	‘갑’의 ()
	생년월일		연락처	이동전화)
	주 소			

제1조【목적】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【계약기간】 ① 계약기간은 2025 년 월 일 부터 202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② ‘을’ 은 계약기간 만료 1주일 전에 ‘갑’ (또는 병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 (또는 병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 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 (또는 병)으로 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 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)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 ⑤ ‘갑’ (또는 병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3조【입소 · 이용료 납부】

구분		시설급여		
일반		20%		
기초수급권자		0%		
기타 의료수급권자,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화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,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	8%, 12%		
구 분		1등급	2등급	3등급
시설 급여	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 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90,450	83,910	79,240
비급여	상급침실 이용료	3,000원		
	식재료비(1식)	3,900 * 3 = 11,700원		
	간식비(1회)	1500 * 1 = 1,500원		
	이/미용료등	무료		

그 밖에 다음과 같은 항목의 비급여는 ‘병’ 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산소비용 : 1일 4시간 이상 3만원(1일 4시간미만 2만원/ 2시간미만 1만원)

(2020. 9.28. 운영규정 변경 : 1일 4시간이상 3,000원, 1일 4시간 미만 1,000원)

-임종처치비 : 10만원(급작스런 자연 사망시는 예외로 함)

-고가의 의료소모품

납부일: 매월 15일까지(전월 급여비용: 후불) / 입금은행: 수협은행(계좌번호 / 1010-1744-3590 예금주: 효은요양원.
‘갑’ 또는 ‘병’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별도 부담한다.

제4조【계약자 의무】 ‘갑’ 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① ‘갑’ 의 의무 1. 월 이용료 납부 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.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‘을’ 의 의무 1. ‘갑’ 의 건강관리 협조 2. ‘갑’ 의 신변이상을 ‘병’ 에게 즉시 연락 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. 기타 ‘갑’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‘병’ 의 의무 1. ‘갑’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. ‘갑’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. ‘갑’ 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 에게 통보 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5조【계약해지 요건】 ① ‘갑’ 의 해지 1. ‘갑’ 과 ‘병’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 ② ‘을’ 의 해지 1. ‘갑’ 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. ‘갑’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‘을’ 은 ‘갑’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제6조【퇴소】 ① ‘을’ 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‘갑’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② ‘갑’ 과 ‘병’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을’ 에게 제출하고, ‘을’ 에게 보관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병’ (또는 ‘갑’)에게 통보 후 ‘을’ 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은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. ③ ‘을’ 은 ‘갑’ 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이 있을 경우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입금한다.

제7조【입소물품】 ‘갑’ 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‘을’ 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제8조【면회 및 외출외박】 ① ‘갑’ 의 면회시간은 매일 09:00시부터 18:00시까지로 한다.(단, ‘갑’ 과 ‘을’ 또는 ‘병’ 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.) ② ‘갑’ 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‘을’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③ ‘을’ 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‘갑’ 이나 ‘병’ 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‘을’ 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 ④ 외출외박 중 ‘갑’ 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은 ‘을’ 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9조【시설관리】 ① ‘을’ 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② ‘을’ 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제10조【건강관리】 ① ‘을’ 은 ‘갑’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갑’ 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‘갑’ 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 에게 별도 징수한다. ④ ‘을’ 은 입소시 ‘갑’ 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⑤ ‘을’ 은 ‘갑’ 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 ⑥ ‘을’ 은 ‘갑’ 이 의사로부터 월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시 지체 없이 ‘병’ 에게 통보한다.

제11조【시설물 배상】 ① ‘갑’ 은 ‘을’ 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‘갑’ 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 ②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‘을’ 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,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【위급시 조치】 ① ‘을’ 은 ‘갑’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병원,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② ‘병’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

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③ ‘갑’ 갑 ‘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’ 을 ‘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’ 병 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‘병’ 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‘을’ 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13조 【임종 및 장례】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병’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 2. 장례는 ‘병’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 ② 무연고자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을’ 의 책임하에 결정한다. 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 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4조 【식사 및 간식】 ① ‘을’ 은 1일3식 및 간식을 ‘갑’ 에게 제공하며, ‘갑’ 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별도 부담한다. ③ ‘을’ 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‘갑’ 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 【요양실의 배정】 ‘갑’ 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‘갑’ 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의 의견을 반영하여 ‘을’ 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 【개인정보보호 의무】 ① ‘을’ 은 ‘갑’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 ③ ‘을’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 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 ③ ‘갑’ 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)으로 한다. ④ ‘갑’ 은 ‘을’ 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 ⑤ ‘을’ 은 ‘갑’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7조 【기록 및 공개】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 【배상책임】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 은 ‘갑’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 1.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‘갑’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‘갑’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함)로 인하여 ‘갑’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‘갑’ 은 ‘을’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 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. ‘을’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‘갑’ 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. ‘갑’ 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. ‘갑’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9조 【이용계약서의 해석】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(특약사항)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1부씩 보관키로 한다.

설명 확인 여부 : 설명 들었음

계약일자 : 2025 년 월 일

‘갑’ 이용자 _____ (인) ‘을’ 제공자 최재관 (인) ‘병’ 대리인(보호자) _____ (인)